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김완섭

● 법률 제20848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1호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비하여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폐업처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